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동북·중앙아시아국, 동북·중앙아시아국 1개 정책관등, 아세안국 1개 과 및 국제안보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8명(5등급 또는 6등급 4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9급 2명), 국립외교원 정원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대한민국재외공관 정원 6명(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및 주재관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며, 외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11.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1. 7. ~ 11.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기획재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재외공관담당관·정보화담당관·외교통신담당관·외교정보보안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혁신행정법무담당관·재외공관담당관·정보화담당관·외교통신담당관·외교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혁신행정담당관·정보화담당관·외교통신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외교통신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부내 법령안의 심사·정비 및 법령집의 편찬·발간

7의3.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제23조제7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940”을 “932”로, 일반직 계 “229”를 “227”로, 운전서기보 “20”을 “19”로, 사무운영서기보 “41”을 “40”으로, 외무공무원 계 “703”을 “697”로,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16”을 “115”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58”을 “156”으로, 5등급 또

는 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7”을 “16”으로,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15”를 “113”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50”을 “942”로, 일반직 계 “229”를 “227”로, 운전서기보 “20”을 “19”로, 사무운영서기보 “41”을 “40”으로, 외무공무원 계 “713”을 “707”로,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18”을 “117”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58”을 “156”으로,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7”을 “16”으로,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15”를 “113”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 계 “107”을 “106”으로, 외무공무원 계 “39”를 “38”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07”을 “106”으로, 외무공무원 계 “39”를 “38”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외무공무원 계 “1,495”를 각각 “1,489”로,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223”을 “222”로,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276”을 “274”로,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251”을 “248”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1

의2,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9호 및 대통령령 제3417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을 말한다.

1.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11월 27일
2. 대통령령 제34175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주슬로베니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의 위치란의 개정규정: 2024년 11월 27일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략)	제8조(기획조정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 운영지원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재외공관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외교통신담당관 · 외교정보보안담당관</u>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⑥ ----- <u>기획재정담당관 · 운영지원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재외공관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외교통신담당관 · 외교정보보안담당관</u> ----- -----.
⑦ <u>기획재정담당관 · 운영지원담당관</u> 및 <u>재외공관담당관</u> 은 <u>외무공무원</u>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9등급으로 하고, <u>혁신행정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외교통신담당관</u> 및 <u>외교정보보안담당관</u> 은 <u>외무공무원</u>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하며, <u>비상안전담당관</u> 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 ----- ----- ----- --- <u>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정보화담당관 · 외교통신담당관</u> --- ----- ----- ----- ----- -----.
⑧ · ⑨ (생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u>혁신행정담당관</u>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u>기획조정실장</u> 을 보좌한다.	⑩ <u>혁신행정법무담당관</u>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신 설></u> 8. ~ 17. (생 략) ⑪ ~ ⑮ (생 략) 제23조(국제법률국) ① ~ ⑥ (생 략) ⑦ 국제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u>11. 부내 법령안의 심사·정비</u> <u>및 법령집의 편찬·발간</u> <u>12.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u> <u>의 총괄</u> ⑧ (생 략)	<u>7의2. 부내 법령안의 심사·정비</u> <u>및 법령집의 편찬·발간</u> <u>7의3.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u> 8. ~ 17. (현행과 같음) ⑪ ~ ⑮ (현행과 같음) 제23조(국제법률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10.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⑧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940</u>	<u>932</u>	-8
·	·	·	
·	·	·	
일반직 계	<u>229</u>	<u>227</u>	-2
·	·	·	
·	·	·	
운전서기보	<u>20</u>	<u>19</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1</u>	<u>40</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03</u>	<u>697</u>	-6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u>116</u>	<u>115</u>	-1
외교통상직공무원			
·	·	·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158</u>	<u>156</u>	-2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u>17</u>	<u>16</u>	-1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	·	·	
·	·	·	
3등급 또는 4등급	<u>115</u>	<u>113</u>	-2
영사직공무원			
·	·	·	
·	·	·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50</u>	<u>942</u>	-8
•	•	•	
•	•	•	
일반직 계	<u>229</u>	<u>227</u>	-2
•	•	•	
•	•	•	
운전서기보	<u>20</u>	<u>19</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1</u>	<u>40</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713</u>	<u>707</u>	-6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u>118</u>	<u>117</u>	-1
외교통상직공무원			
•	•	•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158</u>	<u>156</u>	-2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u>17</u>	<u>16</u>	-1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	·	·	
·	·	·	
3등급 또는 4등급	<u>115</u>	<u>113</u>	-2
영사직공무원			
·	·	·	
·	·	·	

[별표 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7</u>	<u>106</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39</u>	<u>38</u>	-1
·	·	·	
·	·	·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u>17</u>	<u>16</u>	-1
영사직공무원			
·	·	·	
·	·	·	

[별표 2의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07</u>	<u>106</u>	-1
·	·	·	
·	·	·	
외무공무원 계	<u>39</u>	<u>38</u>	-1
·	·	·	
·	·	·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u>17</u>	<u>16</u>	-1
영사직공무원			
·	·	·	
·	·	·	

[별표 3]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495</u>	<u>1,489</u>	-6
외무공무원 계	<u>1,495</u>	<u>1,489</u>	-6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u>223</u>	<u>222</u>	-1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276</u>	<u>274</u>	-2
·	·	·	
·	·	·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u>251</u>	<u>248</u>	-3
·	·	·	
·	·	·	